PL법(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다른 대책 준비해야

사고발생할시 매출 격감
전체원적외선업계 타격예상 · 철저한 준비필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 오는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면 원적외선 관련 업체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제조자 등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인 '가해자의 고의 · 과실(과실책임)'을 '제조물의 결함(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모든 제조물이 이법에 해당된다.

이 법은 현재 미국 EU 일본 선진국과 중국 필리핀 등을 포함해 전세계 27개국에서 도입 · 시행되고 있다.

현재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하나 제품 생산 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입증만으로도 배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책임법에서는 책임의 주체를 제조 · 가공자는 물론 수입업자나 '제조물에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로까지 넓혀 사실상 모든 관련업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결함의 종류도 제조 · 설계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설명 · 지시 · 경고 등의 표시 미흡으로 인한 피해, 위험발생'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손해배상 기한도 손해 및 제조자 등을 달게 된 때부터 3년안에, 또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까지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조물책임법은 책임주체나 결함범위 등 적용대상이 광범위한만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차적으로 제조사들은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의 소지를 제거하고 제품의 설계 · 제조-판매 · 유통-사용 · 소비-폐기 전 과정의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후 결함이 있는 제품을 생산했을 때 이에 대한 회수대책, 결함 제조물에의한 사고발생에 따른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원적외선업계는 제품특성상 자동차같은 타 산업에 비해 제조물책임법의 영향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한번 사고가 발생할 겨우 이미지 하락에 따른 판매격감과 피해보상으로 중소기업의 생사가 결정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중소기업PL 공제사업'을 실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PL공제가입자를 모집,단체로 보험계약을 하면 기존PL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 기준으로 최대 30~4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제조사별로 생산공정개선, 불량품검사강화 우수제품 생산 등을 사고발생 요소를 없애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 지불능력을 높여 도산을 방지하는 최후보루로서 보험가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책임법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제 여건에서 제조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사실이지만 품질향상을 유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양날의 칼'같은 제도이다.

사단법인 한국원적외선협회 최태섭 전무이사는 협회(연구원)에서는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보증 심사(FI마크)를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과대광고 사전심의와 병행하여 과대선전을 지양하고 우수제품을 생산, 소비자의 신뢰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불량제품 추방운동도 벌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 "현재 업계는 정체되고 있는 국내시정에 안주하기보다는 고품질 제품생산이 요구되고 있다"며 "제조물책임법이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